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연/월/일 연/월/일	(전화번호 75 7640)	전 결 규정 조항 과장 전 결 사항
처리기간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기안책임자	김성경 74.		
경유 수신 참조	수신처 참조	발신 신	시 장 계 
제목	예비발전 설비에 대한 지시 1. 2번 동지에서 상공에 설치한 아래 사항을 지시 하나 1번 처리에 착수하도록 함 가. 예비 발전기 수용설비가 300kw 미만 및 1과도 전기 사업 제 48조에 위거 공사 계획 신고로 수리 함 나. 위와 같은 전기 사업 제 48조에 공용 사용권 전기를 할 차이를 함 다. 전기 과장실에 대한 10대설비 이상은 발전장 등 수용 설비에 포함 된 것임.		
주요사항	1. 서문 11 2. 서문 14		

상 공

공공부  
홍익대학교  
197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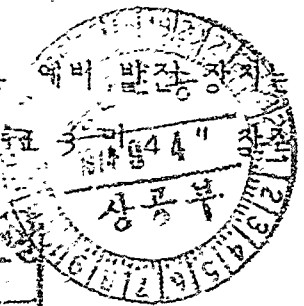
전 력 1321 - 2075 (70 - 3526)

수 신 : 서울특별시

제 목 : 예비 발전 설비에 대한 질의 회신

1974. 9  
공공부  
공공부  
공공부  
공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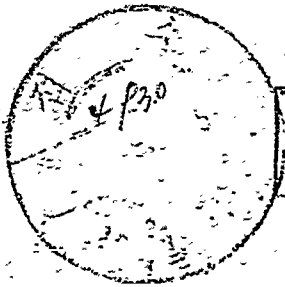
1. 연료 1321 - 708 ( 74.8.31 ) 에 관련입니다
2.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수용설비가 300 키로와트 미만 일지라도 비상용 예비 발전 장치를 가질 경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3 " 에 정한 사전 신고 사항에 해당하므로 전기사업법 제 48 조 의한 공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하며
3. 위의 경우 동법 제 51 조에서 준용하는 법제 32 조에 의한 사요저 거사료 받아야 합니다
4. 전기공작물에 대한 부대설비 비상용 예비 발전 장치는 수용 설비에 포함되는 거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3 " 제 44 " 항 ) 을 점언합니다. 끝



구	점수	서울특별시	제 1
시	일시	87.5.15	
도	접수번호	3P10	기타사항
인			결 일

상 공 부 장

정부공문서 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력 과 장 손 태 영 친결



상 공 부

전 력 1321 - 3 / ( 70 - 3526 )

1975.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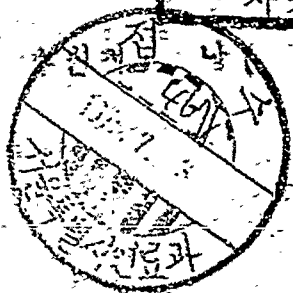
수 신 : 수신적 참조 (서민시장 1)  
 직 록 : 각각용 전기공작물 검사 업무 지침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75. 6. 2 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용 전기공작물 검사 업무 지침  
 이므로 검류전기안전공사와 하연급 보충 직위의 따라 시행령을 준칙하였으니  
 양지사하고 업무 수행에 협조 얻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검사업무 업무지침 1부  
 2. 전기사업법 시행령 1부  
 3. 시행규칙 1부

일련번호	제 13 / 6 조	지시사항
구분	공 부	시행규칙
내역		

정수준원규정 제 7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자관보 김 찬 동



자료 派長	產案 派長	第 1 副 派長

## 검사 대행 업무 지침

### 1. 적용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 2.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가. 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계획의 신고는 상공부 장  
관 또는 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한 위임된 관할  
도지사에게 각각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상공부장관 또는 관할 도지사가 전항의 신청에 대한 인  
가 또는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한국 전기 안  
전 공사 (이하 "안전 공사" 라함)에 통보한다. ✓

다. 상공부 장관 또는 관할 도지사가 공사 계획을 인가하거  
나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당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하여 검사 받아야 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 3. 검사 신청

가. 법 제 32조, 34조 및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  
자 하는 자는 안전 공사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안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4. 검 사

안전 공사는 전기 사업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검사 항목 참조) 검사를 한다.

#### 5. 검사 필증 발급

가. 안전 공사가 검사를 필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검사 필증을 발급한다.

나. 안전 공사가 전항의 검사 필증을 발급한 때에는 15의 이  
내에 그 사실은 상공부장관 또는 관할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한국 전력 주식회사 사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6. 가합적 조치

가. 안전 공사는 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가합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전항의 가합적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 5항 내에 준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 7. 보 고

가. 안전 공사는 검사 업무 4분기보를 매 4분기의 최종 일의 다음달 말일 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 공사는 전항의 보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 1부를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8. 서 식

본 검사 업무에 필요한 검사 신청서, 검사 기록, 검사 필증에 대한 서식은 별도 상공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기 타

기타 검사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기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 끝 -

## 시 험 검 사 항 목

### 1. 사용전 검사

설비별	검 사 항 목	비 고
<p>가. 발전설비</p> <p>1) 수 력</p>	<p>접지 저항 측정</p> <p>비상 정지 시험</p> <p>접연 저항 측정</p> <p>부하 차단 시험</p> <p>부하 시험</p> <p>경보 회로의 확인</p> <p>원방 감사 제어 시험</p>	
<p>2) 기 력</p>	<p>수압 시험</p> <p>보일러 안전밸브 동작시험</p> <p>비상 조속기 시험</p> <p>조속 장치 시험</p> <p>부하 시험</p>	

<p>3) 내 연</p>	<p>부하 시험 비상 조속기 시험</p>	
<p>나. 변전설비</p>	<p>절연 저항 측정 부하 시험 보호 회로 시험</p>	
<p>다. 송전설비</p>	<p>절연 저항 측정 선로 충전 시험</p>	
<p>라. 배전설비</p>	<p>절연 저항 측정 선로 충전 시험</p>	
<p>마. 수용설비 <u>1) 수전설비</u></p>	<p>절지 저항 측정 <u>절연 저항 측정</u> <u>적전기 동작 시험</u> <u>감보 장치 시험</u></p>	



<p>2) 부하설비</p>	<p>절연 저항 측정 및 점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간선</li> <li>2) 전등분기회로</li> <li>3) 동력분기회로</li> </ol>	
<p>바. <u>배전설비</u></p>	<p><u>절연 저항 측정</u></p> <p><u>선로 충전 시험</u> ✓</p>	

2. 용접 검사

가. 비파괴 시험

나. 각개 시험

다. 내압 시험

3. 정기 검사

가. 보일러 안전밸브 동작 시험

나. 보일러 보안장치 시험

다. 터빈 보안 장치 시험

라. 비상 조속기 시험

### 전기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 조 (전기공작물등의 검사) ① 상

공부장관은 법 제 32 조 (법 제 51

조제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법 제 34 조 및 법 제 35

조 (법 제 51 조제 2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중 전기사업용전기공작

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한 자가용 전기 공작물에 대한 검사업  
무는 이를 그 소속 공무원중 상공부  
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  
여금 행하게 하고, <sup>국</sup>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한 자가  
용전기공작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이  
를 법 제 46 조제 1항의 지정조사기  
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  
기관이 자가용 전기 공작물에 대한 검  
사를 대행할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 주임기술자 면허를 받은 자로 하  
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기술자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기사면허

2. 댐·수로주임기술자면허

3. 보일러·터어빈주임기술자면허

② 제 1 항의 전기기사면허, 댐·수로주임기술자면허와 보일러·터어빈주임기술자면허는 각각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③ 주임기술자면허는 상공부장관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1. 전기기사면허에 있어서는 국가  
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  
사 1급 또는 전기기사 2급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공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전기공작물  
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  
무수습을 마친 자

2. 맹·수로주임기술자면허 및 보일  
러·터어빈주임기술자면허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학력 자격

빛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 17 조 내지 제 24 조를 삭제한다.

제 37 조 제 1 항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 제 2 항을 제 3 항으로 하며,

동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4. 제 16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 기술자 (전기 기사를 제외한다)

면허증의 표부 (재표부의 경우를

포함한다) 를 받는 자가 남부할

수수료는 1,000 원으로 한다.

②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검사를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기관이 대행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당해 지정조사기관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의 "가"증 "100킬로  
와트"를 각각 "500킬로와트"로 하며,

동호의 "다"증 단서를 삭제하고, 동

조 동항 제 2 호의 "가"증 "100킬로와트"

를 "500킬로와트"로 한다.

별표 4 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 최대 전력 300 킬로와트 미만의

사업장에 있어서는 60개소

다만, 폭발성 또는 인화성의 물

질이 있어 위험한 장소에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30개소로 한다

나. 최대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 500

킬로와트 미만의 사업장에 있어서는

는 30개소

다만, 폭발성 또는 인화성의 물

질이 있어 위험한 장소에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15개소로 한다



상공부령 제 44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5. 7. 2.

상공부 장관

제 59 조 제 2 항 중 "7,000 볼트"를 "25,000

볼트"로, "300 킬로와트"를 "500 킬로와트"

로 하고, 동 조 동 항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 1 호의 지정 조사 기관의 유자격

종사자 1 인이 점검할 수 있는

사업장 외 수가 다음에 제기한 수

이내 일 것

제 59 조 제 1 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제 4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작은 규모의 자가용 전기 공작물은 다음 표의 자료에 기재한 것중 법제 4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조사 기관으로부터 그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으로 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안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은 다음 표의 무란에 기재한 자료이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 공 부

전력 1321- (73)

70-3526

1977. 3. 4.

수신 수선처장조 (11)

제목 자가용 전기공작물 워킹업부 처력지침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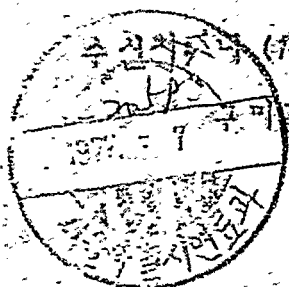
계	관리과제장	연료과장	원
[Handwritten Signature]			원

1. 전력 1321-1920 (75. 9. 16)의 관련입니다.

2. 본건과 관련하여 법첩과 같이 한국전기 안전공사에 워킹업부 처력 지침을 추가 시달하였기 통보하니 귀 업무에 참고하여 자가용 전기공작물 인가 (변경인가) 및 신고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대 한국전기 안전공사 공한서본 1부. 끝.

결재	
지	
사	
상	
공	
부	
장	
관	
정부공공계 규정 제27호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개발공장 허탈출 전철	



상 공 부



전화 1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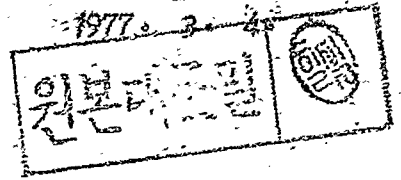
70-3526

1977. 3. 4.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27-1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장

제목 직공용 전기공작품 위임 업무 처리지침 보완



1. 전화 1321-7920 (75. 9. 16)의 관련임.

2. 인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중인 서정희선과 관련하여 직공용 전기  
공작품 검사 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업무 처리지침을 필히 숙달이 추가 시달  
아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

첨부: 검사 수행 업무 지침 1부. 끝.

공 공 부 상

검 사 태 행 업 무 지 침

## 검사대행업무지침

### 1. 적용범위

- 가. 본 지침은 전력 1321-1431 (75.7.1)에 대한 추가 지침임.
- 나. 본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 2. 사용전 검사의 대상

가. 전기사업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함)의 대상이 되는 전기공작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압 10KV 이상의 전선로
- 2) 전압 10KV 이상의 전기기기(단, 수전용 차단기는 1KV 이상)
- 3) 예비발전 설비(상용 또는 비상용을 구분하지 아니함)

나. 사용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수전설비의 최대전력이 300 키로와트 이상인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선, 증설공사
- 2) 수전설비의 수전전압이 10KV 이상인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선, 증설공사
- 3) 예비 발전장치를 가지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선, 증설공사

4) 전 "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기공작물의 신, 증설 또는 대체공사

다. 사용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가용 전기 공작물의 주요시험 및 측정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중요기기의 절연내력 시험에 대하여는 전기공작물 설치자가 제출 또는 비치하고 있는 공인 시험기관의 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 수력발전설비 : 접지저항측정, 비상정지시험, 절연저항측정, 부하차단시험, 부하시험, 경보피로확인, 원방삼시 제어시험 등
- 2) 기력발전설비 : 수압시험, 보일러안전 ~~변~~동작시험, 비상조속기시험, 조속장치시험, 부하시험 등
- 3) 내연발전설비 : 부하시험, 비상조속기시험
- 4) 변전설비 : 절연저항측정, 접지저항측정, 차단기동작시험  
(보호계전기 동작시험 포함)
- 5) 송전설비 : 절연저항측정, 접지저항측정
- 6) 배전설비 : 절연저항측정, 접지저항측정
- 7) 수용설비 : 절연저항측정, 접지저항측정, 차단기동작시험  
(보호계전기 동작시험 포함)

### 3. 사용전검사시의 가합격 조치

전기사업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가합격조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가합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기공작물이 합격기준에는 미달하나 사용방법을 세안하거나 보완조치를 하면 일시적으로 사용하여도 보안상 지장이 없나고 인정되는 경우
- 2)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한 한 전기공작물로서 일부설비가 미준공된 경우로서 미준공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발전설비의 인가출력을 내려서 사용하여야 할 경우

나. 가합격 조치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 4. 용접검사의 방법

전기사업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용접검사의 방법은 설비의 제작자 또는 검사신청인이 제시하는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 5. 검사할 하는자의 자격

전기사업법 제 32 조, 제 34 조 및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용접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시행하는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기사 1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나. 전기기사 2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검사 또는 보안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6. 검 사 기 준

사용전검사, 용접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4 조 및 제 41 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7. 참 고 사 항

전기사업법 제 47 조 및 제 48 조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단, 변전소 및 송전선로는 일반전기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자가용 전기 공작물 설치자에 대하여는 수용설비를 우선 적용하되 수용설비와 별도로 변전소 또는 송전 선로를 신, 증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인가 또는 신고대상 전기공작물  
(자가용 전기 공작물)

전기공작물의 종류	인 가 대 상	신 고 대 상
1. 변 전 소		
가. 변전소의 설치	전압 50KV 이상	전압 50KV 미만
나. 변전소의 설비의 신·증설		
1) 변 압 기	용량 10MVA 이상	용량 2MVA-10MVA 미만 (폐지 포함)
2) 부하시 전압조 정기 또는 부하시 전압 위상 조정기	용량 2 MVA 이상	용량 0.2 - 2 MVA 미만 (폐지 포함)
3) 조 상 기	용량 2 MVA 이상	용량 0.2 - 2 MVA 미만 (폐지 포함)
4) 전력용콘덴서		용량 2 MVA 이상 (폐지 포함)
5) 분류리액터 또는 합류리액터		용량 2 MVA 이상 (폐지 포함)
6) 정류 기기	용량 2 MVA 이상 (또는 출력 2 MW 이상)	용량 0.2-2 MVA 미만 (또는 출력 0.2-2MW 미만) (폐지 포함)

전기공작물의 종류	인 가 대 상	전 고 대 상
7) 차단기 8) 증성점접지 장 치 9) 제어 장치	전압 20 KV 이상 - 전압 50 KV 이상의 변전소용 제어장치	전압 10KV-20KV 미만 전압 10KV 이상 (전력계 동봉) (웨이 포함) 전압 50 KV 미만의 변 전소용 제어장치
2. 송전선로		
가. 송전선로의 설치	전압 20 KV 이상으로 서 공장 10 km (지 중선로는 1 km) 이상	1) 전압 10-20 KV 로 서 공장 5 키로미터 이상 2) 전압 20 KV 이상으 로서 공장 4 - 10 km
나. 송전선로의 증설		
1) 건 설 로	1) 전압 20KV 이상으 로 공장 10 km (지중선로는 1 km) 이상 2) 증압 (20 KV 이상 으로 증압)	1) 전압 10KV-20KV 로서 공장 5 키로미터 이상 2) 전압 20 KV 이상으로 서 4-10 km 미만
2) 개 제 소	전압 50 KV 이상	전압 10-50 KV 미만

3. 수용설비		
가. 수용설비 설치	1) 최대전력 500KW 이상 2) 수전전압 10KV 이상	1) 최대전력 300KW 이상 2) 비상용 예비발전장치
나. 수용설비의 증설 변경		
1) 차단기	전압 10 KV 이상의 수전용 차단기	전압 1-10 KV 의 수전용 차단기 ( 최대전력 300KW 미만의 수용설비에 대한것은 제외 )
2) 중성점접지장치		전압 10KV 이상
3) 기타기기	전압 10KV 이상으로서 용량 1 MVA 이상-또는 출력 1 MW 이상	전압 10 KV 이상의 기기
4) 전선로	전압 20 KV 이상	전압 10KV- 20 KV
5) 부대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장치